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결과

일시 /장소	○ 일 시: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 장 소: - (서면심의)				작성자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자		
					심의요청부서	OOOOOO과		
참석위원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확 인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확 인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OOO		위원	외부위원 (교수)	OOO	
	위원	청렴정책 총괄과장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교수)	OOO					
심의방식	서면심의							
상정안건	제2026-59호	1. 최초 청구 및 결정사항 ○ 접수번호: 16994933 * 청 구 인 : ○○○(접수일: 2026. 7. 3.) * 청구내용 : 특정 행정심판 관련 피청구인 제출 요청 문서 및 회신 문서 * 부서 결정사항 :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2.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가 가능하며,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가 아니고, 공개로 인해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가 현저히 방해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3. 이의신청에 따른 부서 검토의견 * 검토의견: 기각(세부사유 안건자료 참조)						
의견내용	[기각] ○ 기각 의견 ○ 주요 의견 내용 - 대법원 2014두43356 판결에 따르면 ‘의사 결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음. -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행정심판위원회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그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자료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고, 이는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제3기관이 행정심판 심리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는 우려로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심리·재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 판단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알권리보다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행정심판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함 - 청구인의 공개 요청 정보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대상자 평가 기준표 등 보안처분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결정사항	○ 기각